

[서식 예] 집행력있는 정본 수통부여신청서

집행력있는 정본 수통부여신청서

사 건 2000가합0000 대여금

원 고 ㅇㅇㅇ

피 고 ◇◇◇

위 사건에 관하여 20○○. ○. ○. 귀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, 피고는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와 ◎◎시 ◎◎구 ◎◎길 ◎◎에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바, 피고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동시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 재산은닉의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력있는 정본 ○통을 부여해주시기 바랍니다.

첨 부 서 류

1.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2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○○지방법원 귀중



제출법원	1심 법원(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경우 그 상급법원)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	관련법규	민사집행법 제35조
비 용	500원(로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)		
기 타	 ·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줌. 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,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함.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어야함(민사집행법 제35조). ·채권자가 한 지역에서 또는 한 가지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여도모두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의하여 여러 지역에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시에 강제집행을할 수 있음(민사집행법 제38조). 		